

2023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 공모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경쟁력 있는 예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사업 공모> 를 진행합니다. 예술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예술기업이란?

☞ 예술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의 기업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정의) 및 제 36차(개정 22.9.27.), (시행 23.3.28.)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

《공모개요》

- (공 모 명) 2023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참여기업 공모
- (공모목적) 경쟁력 있는 예술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확장 전인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기회 제공
- (공모기간) 공고일 ~ 2023. 3. 10.(금) 15:00까지
- (지원대상 사업기간) 2023. 4월 ~ 11월 (총 8개월)
- (공모단계)

지원단계	기업별 지원금액	지원건수	비고
[1단계] 글로벌 준비 지원	3,500만원~5,000만원 내 차등지급	10개 내외	* 최대 지원신청 가능 금액은 1억원이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단계와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됨 (P. 7. "심사기준" 및 "선정과정" 참고) *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집행의무 있음
[2단계] 글로벌 진출 지원	8,500만원~1억원 내 차등지급	10개 내외	
합계		20개 내외	

* 기업의 지원단계는 서류심사에서 결정되며 이후 아래와 같이 보조금 지원금 범위가 조정됨

(예) 기업이 1억원으로 지원신청하였으나 → 서류심사를 거쳐 1단계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1단계 지원금액 범위(35~50백만원) 내에서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됨

① 1단계 (글로벌 준비 지원)

- (지원대상) 해외 시장에 판매 가능한 상품·서비스·기술을 보유한 예술기업 10개사 내외

* 예술경영지원센터 동 기간 모집중인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예술분야 창업 특화(ESG) 지원> 공모와 중복 신청 불가(심사대상 제외)
* 단회성 해외 공연·전시·행사 참여, 단순·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제외됨

- (지원목표) 글로벌 시장 대상 맞춤형 제품서비스 등 BM 개발 및 해외 현지화
- (신청자격)
 - 해외진출 준비 사업모델(상품, 서비스, 기술) 보유
 - 사업기간(4~11월) 동안 핵심 인력(대표자 등)이 영어 피칭 훈련을 포함한 보육 전 과정 참여 필수
- (지원내용)
 - (교육지원) 법률, 관세, 회계, 특허, 마케팅 등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한 권역별 시장 정보 교육 제공 및 글로벌 진출 기업 사례 특강 등 제공
 - (보육지원) 예술적 차별화 강점을 가진 예술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개별 전담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및 피칭 컨설팅 제공
 - (자금지원) 사업화 자금, 해외 박람회 참가, 비즈니스 미팅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글로벌 준비 지원 프로그램 내용

- 목적 :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 보육기간 : 4월~11월
- 지원 개요
 - ① (보육) 국내 액셀러레이팅
 - 맞춤형 시장정보 제공 : BM 분석, 기업가치평가, 시장 포지셔닝, 현황 파악 등
 - 1:1 컨설팅 (역량진단) : 글로벌 BM 개발
 - 피칭 컨설팅 : 영문 피치덱 제작 및 영어 피칭 컨설팅, 데모데이 참석
 - 비즈매칭 및 멘토링 등
 - ② (행사) 해외 박람회(컨퍼런스) 참가 지원
 - 부스 참가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일반 참관 지원 불가
 - 참가 실무자에 한해 기업별 3명 / 최대 7일까지 국외여비 지원 가능
 - 출장 계획 및 결과보고 필수

② 2단계 (글로벌 진출 지원)

- (지원대상) 해외 진출 계획이 명확하며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예술기업 10개사 내외

* 예술경영지원센터 동 기간 모집중인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예술분야 창업 특화(ESG) 지원> 공모와 중복 신청 불가(심사대상 제외)
* 단회성 해외 공연·전시·행사 참여, 단순·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제외됨
* 본 지원을 통한 해당분야 파급효과 및 성과 관련 정량·정성적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지원목표) 글로벌 진출 예술기업의 해외 피칭대회 예선 진출, 수출실적 발생, 국내·외 투자 유치 달성 및 해외 법인·지사 설립
- (신청자격)
 -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국내·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예술기업*
 - 기업공개(IPO) 전 단계의 비상장 및 국내·외 법인사업자**
 - 사업기간(4~11월) 동안 핵심 인력(대표자 등)이 영어 피칭 훈련을 포함한 보육 전 과정 참여 필수

* 해외 마케팅 및 세일즈 인력 보유 등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 사업 공고일 이전 국내 또는 국외 법인사업자로,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대한민국 상법상 설립된 법인이
①최대주주이거나, ②보유한 주식의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함

- (지원내용)
 - (교육지원) 법률, 관세, 회계, 특허, 마케팅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실무·심화 교육 제공
 - (보육지원) 예술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권역별 비즈니스 모델의 현지화 과정 및 PMF(제품 시장 적합성, Product Market Fit) 컨설팅, 해외 법인설립·운영 맞춤 컨설팅, 해외 IR 컨설팅, 현지 비즈니스·투자자 네트워크 제공
 - * 중간평가 이후 상위그룹 대상 해외보육(1~2주 이내) 진행 예정이며, 해외보육 시 현지 박람회 부스 참가 또는 투자대회 참가는 의무사항임
 - (자금지원) 사업화 자금, 해외 박람회 참가, 비즈니스 미팅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내용

- 목적 : 글로벌 유통 및 현지화
- 보육기간 : 4월~11월 (해외보육 9~10월 중 예정)
- 지원개요

① (보육) 국내·해외 액셀러레이팅

- 맞춤형 경영 컨설팅*
- 1:1 컨설팅 (수출 역량진단) : BM 전환(현지화) 및 PMF*

* 경영 컨설팅 항목(예)

- 해외 현지 법인설립 및 운영, 해외사업계약서 검토 등 자문
- 해외 특허출원, IP 관리, IP R&D 전략 컨설팅 및 해외상표·디자인·저작권 자문
- 기업가치평가 컨설팅, 회계, 세무, M&A 및 IPO 자문
- 상품 및 서비스 PR, 디지털·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 자문

* PMF 컨설팅 항목(예)

-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맞는 고객과 시장 정의
- 기업의 타겟 시장 기반 사용자 경험 조사 (UX Research)
- 잠재 고객 발굴 및 잠재 파트너 미팅, 시장 검증 및 세일즈 전략 컨설팅

- IR 컨설팅 : 영문 피치덱 고도화 및 영어 피칭 훈련, 비즈매칭 및 데모데이 참석

② (행사) 해외 창업 박람회 참가 지원

- 해외보육 시 현지 박람회 부스 또는 투자대회 참가 필수
- 개별 해외박람회 참가의 경우 부스 참가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참가 실무자에 한해 기업별 3명까지 국외여비 지원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전담 멘토 및 센터와 상의 후 결정 가능
- 출장 계획 및 결과보고 필수

《공모유형별 세부내용》

지원단계	[1단계] 글로벌 준비	[2단계] 글로벌 진출
주력권역	아시아 권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및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등) * 북미 및 유럽 권역 등 기타 권역 진출 희망 기업도 지원 가능함	
지원목표	비즈니스모델 해외 현지화 (진출 권역 대상 BM 개발)	해외 유통 현지화 (해외 법인/지점 설립 등)
지원내용	▶ 국내 액셀러레이팅*(보육) -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교육 등 - 해외 법률, 특허, 관세 등 경영 관련 기업 맞춤형 지원 ▶ 판로개척(시장) - 해외 권역별 시장 리서치 컨설팅 - 해외 유통 플랫폼 연계 지원 ▶ 해외투자 - 영문 피치덱 제작 및 영어 피칭 컨설팅 - 데모데이 (1회 이상)	▶ 국내·외 액셀러레이팅*(보육) -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교육 등 - 해외 법률, 특허, 관세 등 경영 관련 기업 맞춤형 지원 - 중간평가 후 상위그룹 대상 해외 현지보육 ▶ 판로개척(시장) - 해외 유통 플랫폼 연계 지원 - 해외고객 구체화, 시장 적합성 검증 등 PMF 컨설팅 ▶ 해외투자 - 영문 피치덱 제작 및 피칭 훈련 등 IR컨설팅 - 해외 투자자 미팅, 비즈매칭 등 투자 연계 기회 제공 - 데모데이 (1회 이상)

선정자격	▶ 상품·서비스·기술 및 BM 보유 ▶ 대표자 및 주요 실무자 영어 능통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전 과정 수강 가능
	(4~8월) 통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8월) 중간평가 (9~11월) 단계별 액셀러레이팅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해외 현지보육 포함 (12월) 최종평가 및 성과공유회

《추진절차》

단계	일정	세부 내용
공모 지원신청 및 접수	공고일~3.10	예술기업 ○ 사업계획 수립 : 목표 설정, 세부운영 내용 설정 ○ 지원신청서 작성 및 지원서류 준비 ○ e나라도움 통한 공모 지원신청
심사·선정 및 교부	4월	센터 ○ 서류심사 → 심층면접 → 발표심사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 (선정된 예술기업) ○ 센터와 협의를 통한 최종 계획 수립 ○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문 및 e나라도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진행	4월~11월	1단계 글로벌 준비 지원 ○ (4~8월) 교육/보육 ○ (8월) 중간평가 ○ (9~11월) 피칭 컨설팅, 데모데이 2단계 글로벌 진출 지원 ○ (4~8월) 교육/보육 ○ (8월) 중간평가 ○ (9~11월) IR 컨설팅, 데모데이 * 9~10월 해외보육 의무 참석
정산 확정	12월	보조사업자 ○ 성과공유회 및 최종평가 ○ 설문 답변 ○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제출 - 회계검사 및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 사업추진 과정 중 세부 일정 및 내용 변경될 수 있음

《공모신청 · 접수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 ~ 2023. 3. 10.(금) 15:00까지

※ 접수 마감일 이후 최종 선정 수의 1.5배 미만 접수 시 접수기간 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출 방법
필수제출	1.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	e나라도움에서 직접 작성
	2. 지원신청서(한글파일 제공서식, 날인 필수) 1부 - 상기 서식 내 '체크리스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 3. 2021~2022년 재무제표 각 1부 - 손익계산서 포함 - 제출 불가 시 수지계산서(제공서식)로 대체 제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제출 5. 예술기업 소개자료 1부 ※ 기업의 기밀정보 및 민감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 - 기업정보와 사업모델이 확인 가능한 기업 소개 자료(자유양식)	e나라도움에서 첨부 제출
선택제출	6. 해외 진출 활동 증빙 자료 - 해외 수상 이력, 해외 사업 실적, 해외 투자확약서* 등 *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기관투자자(VC, 벤처투자기관, 투자회사 등)로부터 받은 투자확약서 등 7. 기업 관련 지정 및 인증서(해당 시)	e나라도움에서 첨부 제출

○ (주의사항)

- 접수마감(23.3.10.(금), 15:00까지)은 e나라도움 제출 완료 신청서만 유효함(15시 이후 입력 불가)
- * 접수 마감일은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 마감일 이전에 신청 완료 권장

* 지원신청서 접수, 사업자 선정, 예산 교부 및 정산 등 본 사업의 모든 절차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됨
* 예술경영지원센터는 e나라도움 시스템 장애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 대응이 불가하며, 지원내용 외 e나라도움 사용문의 및 장애신고 등은 e나라도움 사용자센터(1670-9595) 이용

-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2023. 3. 3주 ~ 4. 5주(예정)

공모접수	요건검토	1차 심사	심층면접	2차 심사	선정발표
3.10.(금) 15:00까지 접수마감	3월 3주 서류미비, 중복신청, 신청자격 등 검토	3월 4주~ 4월 1주 서류심사	4월 1주~ 4월 2주 서류심사	4월 2주~ 4월 3주 발표 및 면접심사	4월 4주~ 4월 5주 최종선정결과 공고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사

- (1차) 서류심사

- (2차) 심층면접 및 발표심사

* 서류심사에서 1차 선정된 기업은 심층면접과 발표심사 모두 참여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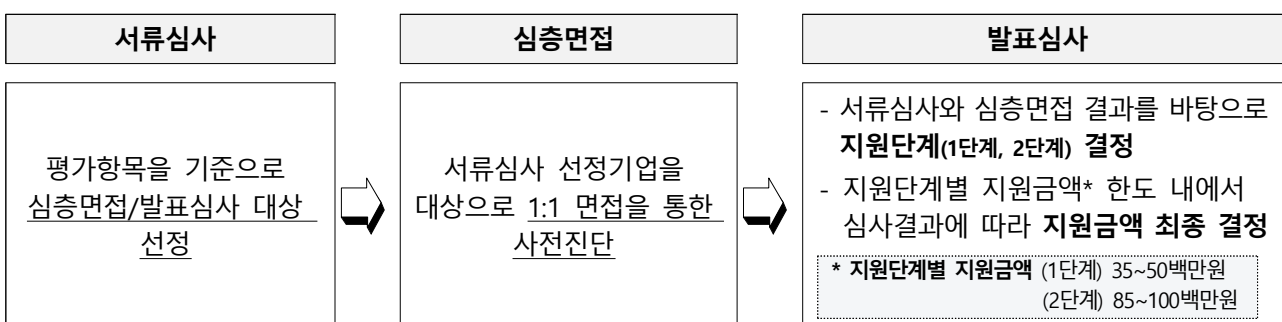
* 심층면접과 발표심사 둘 중 하나에라도 불참 시 선정에서 제외됨

* 발표심사 시 지원자는 한국어로 발표, 질의응답 시 영어면접이 진행될 수 있음

○ (심사기준)

단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명료성 및 타당성	- 사업 목적이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며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 - 지원금 운영 계획과 기간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었는가?
사업수행	예술기업의 전문성 및 글로벌 역량	[전문성] - 효과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 해외진출 활동에 필수적인 영어 능통 내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글로벌 역량] - 비즈니스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 유사 해외사업 추진 경험 및 성과가 있는가?
사업성과	사업의 파급성 및 기여도	- 비즈니스 모델의 글로벌 스케일업 가능성이 있는가? - 비즈니스 모델의 예술분야 파급효과 및 기여도가 있는가?

○ (선정과정)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 ① 사업 공고일 기준 주권 상장기업, 고유번호증, 면세사업자 신청 불가
- ② 예술경영지원센터 동 기간 모집 중인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예술분야 창업 특화(ESG) 지원> 공모와 중복 신청 불가(심사대상 제외)
-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③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④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 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⑤ 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⑥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 ⑦ 성폭력범죄 관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⑧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gambling·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기업
- ⑩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 (지원 제외대상)

- ① 2023년 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지원기관의 유사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에 중복 공모신청 가능하나, 최종 선정(협약)은 1개 사업만 선택해야 함. 추후 중복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조치되며 이후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공모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타 사업 동시수행 불가)
- ② 단, 본 공모사업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등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 종료) 또는 3개월 이내 협약 종료 예정인 기업은 신청 가능함
- ③ 해외창업공간 지원, 공유오피스 등 공간 지원만 받는 경우나 홍보 지원, 바우처 지원, 교육 지원 등 사업화 자금이 아닌 부분 지원을 받는 경우엔 공모신청 가능 (선정 시 예산집행 중복 불가)

《사업 수행 시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 협약체결 후 일방적인 중도포기 시 향후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취소(사업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협약서 및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가이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공모신청 시 계획한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시 필수 참여 및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사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서약서 제출
 - 선정사 인력 중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참여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소속 사용자, 근로자, 프리랜서를 의미함. 다만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수행 시)

- 사업선정 이후 세부사업 및 예산계획을 센터 및 육성기관과 협의한 후 교부 예정임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보조금, 자부담 집행 필수임
- **사업 선정 이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전 과정에 필수 참석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기업 성장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 중단 가능함**

선정자가 사업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교부신청서의 사업내용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국고보조금 사용이 적발된 경우 등이 발생하여 센터가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중이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 집행된 지원금도 전액 환수됨

- 사업기간(협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가능함
- 본 사업의 보조금은 타 정부지원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전에 센터 승인 없이 임의 용도 변경하여 집행한 지원금(자부담 포함)은 불인정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 선정자는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성과 관리 등에 필요한 설문, 조사, 정보 제공 등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지원본부 사회가치창출팀

- 전화 : 02-708-2277, 2231

- 이메일 : global@gokams.or.kr

※ 전화문의 : 평일(월~금) 10:00~17:00 중 가능(평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0조)
- ※ 지원 사업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선정사(대표)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